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6호
----------	------------

제출연월일: 2007. 1. 12.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군·구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능 강화와 한기기구 기한만료에 따른 직제 개편에 맞추어 공무원 정원을 정비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변동 없음(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

- 1) 지방공무원 총수 : 856명 (현행 유지)
 - 집행기관의 정원 : 840명 (현행 유지)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현행 유지)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조정(안 별표)

- 본 청 : 456명 ⇒ 439명
 - 일반직 : 4급(3 → 3명), 5급(18명 → 19명), 6급(98명 → 91명),
7급(116명 → 115명), 8급(94명 → 94명), 9급(40명 → 40명)
 - 기능직 : 6급(4명 → 5명), 7급(12명 → 11명), 8급(18명 → 16명),
9급(33명 → 25명), 10급(18명 → 18명)
 - 정무직 : 1명 → 1명, - 별정직 : 6급상당(1명 → 1명)
- 의회사무국 : 16명 ⇒ 16명

- 일반직 : 4급(1명 → 1명), 5급(2명 → 2명), 6급(3명 → 3명),
7급(1명 → 1명), 8급(3명 → 3명)
- 기능직 : 8급(2명 → 2명), 9급(4명 → 4명)
- 직속기관 : 132명 ⇒ 132명
 - 일반직 : 4급(2명 → 2명) 5급(6명 → 6명), 6급(19명 → 20명),
7급(35명 → 35명), 8급(20명 → 20명), 9급(2명 → 2명)
 - 기능직 : 7급(1명 → 1명), 9급(4명 → 4명)
 - 별정직 : 6급상당(11명 → 11명), 7급상당(3명 → 3명)
 - 지도사 : 29명 → 29명
- 사업소 : 57명 ⇒ 74명
 - 일반직 : 5급(5명 → 4명), 6급(11명 → 12명), 7급(10명 → 15명),
8급(10명 → 12명), 9급(3명 → 4명)
 - 기능직 : 6급(1명 → 0명), 7급(1명 → 2명), 8급(3명 → 5명)
9급(4명 → 12명), 10급(9명 → 8명)
- 읍 : 22명 ⇒ 22명
 - 일반직 : 5급(1명 → 1명), 6급(5명 → 5명), 7급(6명 → 6명),
8급(4명 → 4명), 9급(4명 → 4명)
 - 기능직 : 8급(1명 → 1명), 10급(1명 → 1명)
- 면 : 102명 ⇒ 102명
 - 일반직 : 5급(7명 → 7명), 6급(28명 → 28명), 7급(21명 → 21명),
8급(15명 → 15명), 9급(19명 → 19)
 - 기능직 : 9급(6명 → 6명), 10급(6명 → 6명)
- 동 : 71명 ⇒ 71명
 - 일반직 : 5급(6명 → 6명), 6급(6명 → 12명), 7급(28명 → 24명),
8급(17명 → 15명), 9급(8명 → 7명)
 - 기능직 : 10급(6명 → 7명)

다. 한시정원 연장(안 부칙 <2001. 9. 15> 제2항 제1호)

- 복식부기 전담인력 : 2명(7급 1명, 8급1명)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 1명(7급 1명)
- 소나무재선충방제 전담인력 3명(7급1, 8급1, 9급1)
- 존속기한 : 2006년 12월 31일 → 2008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 개편지침」
(행정자치부, 2006. 9. 19)
-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지침
(행정자치부, 2003. 5. 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2002. 1. 10> 의 제2항 제1호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56	439	16	132	74	22	102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77	362	10	84	47	20	90	64
4급	6	3	1	2				
5급	45	19	2	6	4	1	7	6
6급	170	91	3	19	12	5	28	12
7급	217	115	1	35	15	6	21	24
8급	163	94	3	20	12	4	15	15
9급	76	40		2	4	4	19	7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관								
지도사	29			29				
기능직 합계	134	75	6	5	27	2	12	7
6급	5	5						
7급	14	11		1	2			
8급	24	16	2		5	1		
9급	51	25	4	4	12		6	
10급	40	18			8	1	6	7

관계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9조(한시정원) ① ~ ⑤ 생략

⑥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